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 응 식 의원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지난 8월 16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서울시 관내 약 62만여 동의 민간건축물 중 54만여 동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나 관리청 모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들 건축물이 철거되기까지 안전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행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시장 또는 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직권 안전점검 시행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반대의 입장에서 즉,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스스로가 위험을 느껴 허가권자에게 안전점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건축주가 사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유료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 적잖은 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불안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년 7월에 동 조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와 각 구청이 조만간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건축안전센터로 하여금 시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법정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정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54만여동의 서울시 민간건축물이 혜택을 받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